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서범수・이헌승・김기현

박성민 · 김은혜 · 이인선

백종헌 · 김선교 · 강대식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한편 2023년 10월 제정된「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 하고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 등 실질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도심융합특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심융 합특구에 가업이 소재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가업(법인인 중소기업만 해당한다)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5항·제8항제2호 또는 제9항"으로, "말일 또는 제8항제2호"를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5항·제8항제2호 또는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5항·제8항제2호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⑨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도심융합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

받지 아니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	
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	
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	
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	
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	
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	
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u>한다</u> .	- <u>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u>
	또는 주사무소가 「도심융합특
	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설>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 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 심융합특구"라 한다) 내에 소 재한 가업(법인인 중소기업만 해당한다)을 상속하는 경우에 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 ⑨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한 도를 적용받지 아니한 상속인 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도심융합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받 지 아니하여 추가로 공제받은 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 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 에 가산한다.

<u> ①</u> -----<u>제5항·제8항제2</u>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 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 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 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

호 또는 제9항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제9항-
<u>제5항 · 제8항제2호</u>
또는 제9항
① <u>제5항·제8항제2호 또는 제</u>
<u>9항</u>

(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	
다.				